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5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윤재갑·홍문표·전용기

김수흥 • 위성곤 • 이개호

김민철 • 문진석 • 민홍철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세계 각국이 상황 타개를 위해 이례적이고 전방위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선 만큼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조세지원을 지속하고, 정

부에서 100% 출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 훈련시설(화훼공판장·농식품유통교육원·농산물비축기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감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및 화훼산업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농수산물저장·유통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조).
-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 다.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 라.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 마.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4조).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감면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감면 특례기한을 20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 0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20년"을 각각 "2025년" 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

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7조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한 감면) ①
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	
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	
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u>	<u>2</u>
<u>020년</u>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u>025년</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다.
- 1. ~ 3. (생략)
- ③ ④ (생 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저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 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u>2020</u>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저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

1.•2. (현행과 같음)
2
<u>2025년</u>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000513
<u>2025년</u>
2
<u>2025</u>
<u>년</u>
세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 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 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 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 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 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 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②·③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저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u>2025년</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저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

<u>2025년</u>
1. ~ 5.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 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2025년</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u>2025년</u>

④·⑤ (생 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 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 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 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 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 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 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 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 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 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 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 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 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 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법인 등 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

②「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 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 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 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 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③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 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 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 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 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 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u>
<u>5년</u>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감면

②・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2025년</u>